

(통권 22-3호)

예산·재정정책 정보

본 보고서는 충청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,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·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·정리한 자료입니다.

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,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Tel : 635-5205)

2022. 4. .



충청남도의회사무처
(예산정책담당관)

분 야 별 목 차		
분 야	제 목	페이지
I. 경제	1. 충남경제 -월간 충남경제3월호	1
II. 재정	2.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필요성 및 적정 법정률 도출	3
	3.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의 경로의존성과 정부간 재정관계	6
	4.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	10
III. 정책	5.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진단을 위한 연구	14
	6. 국토교통분야 메타버스 적용 이슈와 전망	17
	7. 긴급재난지원금 이 관광·문화예술·콘텐츠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	20
IV. 법률 제·개정	8. 「 고향사랑기부금 에 관한 법률」 제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	22

1. 충남경제-월간 충남경제3월호

○ 산업생산, 수출입, 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충남의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상승

- 다만, 미국의 금리인상,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속화, 공급망 문제 등 경기 하방 요인 역시 상존하고 있는 상황
- 2월 도내 제조업 경기는 수출, 생산설비, 제품재고, 판매가격 등의 부문에서 호전세를 이어가고 있으나, 채산성, 인력사정, 자금사정 등의 부문에서 부진을 지속.
- 특히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눈에 띄며 경기 악화를 전망하는 기업이 대다수인 모습
- 비제조업 경기는 최근 거리두기 시행조치가 일부 완화되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폭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밑돌며 부진을 지속하는 모습
- 도내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, 1차 금속, 화학제품 등 핵심 제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. 다만, 자동차 제조업 생산은 1월 일시적 가동 중단(전기차 생산설비 공사 진행)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낸 모습
- 2월 기준 충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6.7% 증가한 87억 9,300만 불. 반도체,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, 베트남, 미국, 대만 등과 교역이 활발
- 무역수지는 49억 3,500만 불로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전국 시

도 중 1위 기록(수입액 38억 5,800만 불, 43.9%)

- **도내 고용시장**은 지난해 코로나19 고용충격 기저효과의 축소에도 불구하고, 지난달에 이어 뚜렷한 고용지표 개선세가 이어지며 양적, 질적 회복을 이어나가는 모습
- 상용직, 사업·개인·공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대면 업종인 도소매·숙박음식업,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
- **도내 소비자물가지수**는 명절 이후 수요 감소, 지난해 작황 호조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, 개인서비스, 외식물가서비스 가격의 상승폭은 확대된 모습. 특히 국제유가 상승, 인플레이션 우려 또한 지속되고 있는 상황

출처 : 충남연구원(2022. 3)

2.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필요성 및 적정 법정률 도출

○ 보통교부세의 인상 필요성 및 필요규모/법정률 산정

- (인상 필요성) 보통교부세 산정과 지방재정 운영현황, 해외사례 검토에 더하여 인구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, 보통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조정효과를 분석해봄
- (인구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) 인구수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일인당 자체수입은 미약하게 증가하거나 증가하지 않은 반면, 일인당 총지출은 급격하게 상승하여 인구수가 적은 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재원을 받지 않고서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충당하기가 불가능함
 - 이는 동종 자치단체 간에도 인구분포의 차이가 많아 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 심화 및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
 - 따라서, 수도권-비수도권, 광역-기초 간의 재정균형 강화 뿐만이 아닌 인구수가 적은 자치단체-인구수가 많은 자치단체 간의 재정균형을 강화하고 재원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교부세를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
- (보통교부세 재정력 격차 조정효과) 보통교부세 배분 후에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가 확연히 줄어들음을 보여, 보통교부세가 재원보장과 동시에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함
 - 다만, 2006년 지방교부세 법정률 동결 이후 재정부족액의 규모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 교부세 배분 후에도 잔여 재정부족액(재정부족액-보통교부세)의 편차는 예전에 비해 큰 수준으로 남아있게 됨

- **(필요규모 ①)**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장을 위해서는 적어도 과거 평균 재원충족률(조정률)을 필요 법정률의 기준으로 산정해 볼 수 있음
- **(필요규모 ②)** 사회복지비 확대에 따른 연평균 지방부담분을 추계하여 지방재정수입의 보수적·낙관적 예측에 따른 필요 법정률을 도출

○ **(정책제언)** 지방의 재정부족액은 증가하는 반면 교부세 산정액은 그에 미치지 못해 교부세의 재원보장기능이 약화되고 있고, 지역간 재정부족액의 격차 또한 커짐

- **바람직한 지방재정분권**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자체 수입으로 조달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도권에 경제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, 지방세 확충을 통해 자체재원을 조달할 시에 지역간 세수불균형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
- **지방소비세율 인상**에 따른 내국세 감소, 자치경찰제 시행, 사회복지 수요의 증대,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 확대 등의 현안을 고려해 볼 때,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,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면서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일반재원인 교부세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
- **교통·에너지·환경세**가 1994년 도입 이래 27년째 일몰연장을 하고 있어 뚜렷한 과세의 목적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최근 5년 평균액인 14조 9,615억

원이 내국세로 편입되면 지방교부세 정률분을 2조 8,786억 원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재원의 추가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- 마지막으로, 기본적으로 이전재원의 성격을 가지는 보통교부세의 확대는 **연성예산제약**(예산이 지출의 제약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)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·해소하기 위한 자체노력 유인제도의 확대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

출처 : 한국지방세연구원(2021.12)

3.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로의존성과 정부간 재정관계

-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역대 정부의 지역 정책 방향에 따라 **정책추진의 재정적 도구로서 존재**해 왔으며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도 **재정 분권**을 위한 재정제도 개편의 중심축
 - 재정분권과 지역개발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나 중앙재정당국에서는 균특회계 운영의 세부 내용인 사업 및 지역 자원 배분에 대해 **비밀주의**를 유지함으로써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웠음.
 - 역대 정부에서는 **수도권-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**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수도권 집중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과제임.
- 정부 간 재정 관계는 **재정적 자율성 혹은 통제 정도**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는데 재정 이전방식에 따라 통제 정도가 달라지며, 특히 **개별보조금(국고보조)**이 통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재정분권 추진 시 **국고보조금 개편**이 주요 이슈로 부각됨.
 - 중앙정부는 서비스 전달 기관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 이전(국고보조금)이 불가피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을 통해서만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없기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(보통교부세)을 받는 구조임.
 -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**지방양여금**이라는 **포괄보조금** 방식의 재원을 흡수하면서 지방양여금의 재원 운영방식을 계승하였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논의를 위하여 지방양여금 재원 운용방식인 포괄보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.

- **(정책 제언)**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**합리화 방안**을 제언함.
 - 현행 지역격차를 고려하여 예산 배분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배분 내역 공개를 통한 **비밀주의 타파**가 필요함.
 - 국가균형발전회계 재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인 주세는 지방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양여금 재원이었으므로 운영체계 개편에 대해 **지방자치단체 의견**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가 필요함.
 -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보조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목적에 따른 운용을 위해 정책목표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성과 중심 평가지표로 구성하고, 지역발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마다 적절하게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**정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폐지**가 필요함.
 -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 편성된 사업별 국비 부담 비율 합리적 산정을 통해 **일반회계 법정 전출률 도입**도 고려하여야 함
 - 이를 통해 재정 당국의 임의적 전입금 규모 조정 방지를 위한 내국세 기준 일정률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법정화 시키는 것을 제안함.
- **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의 전환**이 이루어져야 함.
 - 첫째,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에 대한 접근의 의미는 **어디에 재원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**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.
 - 다소 추상적인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인하여 목적상의

동질성 없는 많은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- 둘째, **사업 편성방식의 개편**이 필요함.

-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을 통해 해당 정책목표에 따른 지역 간 격차 축정을 분명히 하여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자원배분 필요

○ **균특회계 세입 재원의 전반적 개편**도 고려할 수 있음.

-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비밀주의, 부적절한 예산 배분, 특별회계로서의 기능 상실 포괄보조 성격 약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를 폐지가 고려한다면 개편 방향 제시가 가능함.

- 개편방안의 주된 논의는 **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원**에 관한 것이 되며 주세, 과밀부담금, 개발부담금,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, 광역교통시설부담금,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전입금 등이 해당됨.

- 첫째, 주세는 주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적 성격으로 특정 목적에 투입해야 하는 특정한 세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로의 전환이 가능함.

- 둘째,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낙후지역의 개발이라는 점을 고려할 시, 개발제한구역이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 세입원으로서 성격을 갖기 어렵고 균특회계가 폐지될 경우 ‘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자원’으로 사용되어야 함.

- 셋째,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각 시·도의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귀속되게 하여 해당지역 광역교통시설 개선 활용

- 넷째, **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전입금**은 각 시·도(경찰청)에 해당 지역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귀속시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.
 - 다섯째, **과밀부담금**은 50%는 소관부처에 귀속되도록 하고, 나머지는 해당 건축들이 있는 시·도에 귀속 합당함.
 - 여섯째, **개발부담금**은 전부를 토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.
 - 일곱째, **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**은 현행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내부거래를 통한 예산 부풀리기라는 평가가 불가피하며 운영현황이 기형적인 이유로 재원의 전출없이 현행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 편성 집행해야
- 재정 분권 추진 시 재원 이양의 방법은 재정 중립 논리와 상관없이 **중앙정부가 사업수행의 책무를 부여할 수 없는 지방세 중심**으로 이루어져야 함.
-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중앙재원을 지방 이전 하는 데 있어 **재원 중립을 유지**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이론적 측면에서 재정 분권과 재원 중립은 이론적 결이 달라재정 분권의 방안이 될 수 없음.
 - 2004년도 전후 **분권교부세 도입**을 통해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정 분권 방안으로서 재원 이양에 따라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 중앙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징발하는 수단이 되어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 가능

출처 : 한국지방세연구원(2021.12)

4.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

-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의식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가운데,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며 EU, 미국,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
 - 우리나라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, 중간 목표인 2030년 감축목표(NDC)의 상향을 발표
 -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논의 역시 본격화되며, 탄소가격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
- 우리나라의 기존 에너지환경 세제는 부문별·연료별로 불균형하고 외부비용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
 - 세수 활용의 경직성에 대한 문제와 현재 에너지세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
 - 기존의 에너지환경세제와 탄소가격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
 - 특히 탄소세를 신설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의 외부비용을 세율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고, 자율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며, 마련된 재원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
- 탄소세와 함께 탄소가격제도로 분류되는 배출권거래제가 국내에서 이미 운영 중이기 때문에,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 과세의 범위와 세율을 결정할 때 배출권거래제와의 정책 조합을 고려
 - 단기적으로는 배출권 대상과 할당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탄소세

대상과 세율을 결정하는 경우를 고려하였고,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 대상과 할당량, 탄소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상황을 상정

- 이러한 상황에서 복수의 탄소가격제도에 대한 최적 탄소가격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**부분균형 이론모형을 구축**
- 해당 모형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소가격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와,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화석연료와 친환경에너지의 투입량을 결정하는 개별 의사결정자들로 구성
- 배출권거래제와의 정책 조합을 고려하여 탄소세의 과세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**배출권거래제에 참가하는 대상들에 대한 탄소세 부과 여부**
- 본 보고서는 배출권 참가자에 대한 탄소세 부과는 배출권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그 효과가 모두 상쇄되고 추가적인 감축을 유도하지 못하며, 배출권가격의 하락과 배출권 시장의 거래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음
-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는 상당수의 국가들 역시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대해 탄소세를 면제하거나 환급
- 배출권거래제가 이미 운영 중인 상황에서 탄소세를 추가로 도입하는 국내의 경우에도, 배출권거래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면제·환급하여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을 구분하는 방식의 정책 조합이 적절
- 배출권 할당량에 따른 적정 배출권가격의 기댓값과 적정 탄소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, 탄소세율과 배출권가격의 기댓값은 최적

의 상황에서 갇아짐

- 따라서 탄소세 도입 시에는 이미 외부비용과 감축비용을 반영하여 형성되고 있는 배출권가격을 이용하여 탄소세율을 설정
- 한편, 배출권거래제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면, 배출권거래제의 총 할당량과 유·무상 할당 비율을 조절하거나 시장안정화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바람직
- 추가적으로 감축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산업별·부문별 차등화는 적절하지 않으나, 탄소세 부과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나 소득 역진성과 같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는 산업 및 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차등화를 고려

○ 본 보고서는 탄소세 세수의 활용방안과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한 수용성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**설문실험을 수행**

- **세수 활용방안**은 기존의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, 균등배분으로 가계를 지원하는 방안,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방안으로 구분
-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는 탄소세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한 정보와 환경적 가치를 강조한 정보로 구분
- 전체 표본에서 세수 활용방안의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, 균등배분 방안이 전반적인 수용성을 낮추는 것
- 구체적으로 **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기준으로** 구분하여 살펴보면, 기후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감면이 긍정적인 영향
- 반면, 기후변화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한 경우에는 녹색투

- 자 방안을 제외한 다른 세수 활용방안들에서 모두 부정적 효과
- 정보 제공은 종류에 상관없이 단기적으로 수용성을 개선
 - 또한 정보 제공과 같이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이후에도 세수 활용방안에 따른 수용성의 차이는 유지되는 것
 - 따라서 탄소세의 도입 단계에서 세수 활용방안에 따른 수용성의 차이가 사전적으로 반영되어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 시사
 - 추가적으로 세수 활용방안과 정보제공은 서로 간에 정합성을 가질 때 수용성 변화의 효과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
출처 : KDI (2021.12)

5.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진단을 위한 연구

- 청년층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'19년 1월 「청년기본법」을 제정하였으나, 각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정책은 기존사업의 일부로 추진되거나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
 - 중앙부처 청년추진체계는 ‘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’를 주축으로,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체계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현재 이미 모든 광역시와 모든 도에서 청년기본조례 마련, 기본계획 시행 중
-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들은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일자리 정책을 중심, 지자체의 청년정책은 중앙정부차원의 정책들에 비해 다각화되고 세분화된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책 구성
 - 기본조례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집행할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였고, 지방 간, 조직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
- 청년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유형화 분석결과 확인된 구조적 특징
 - 청년정책의 주요 추진 주체는 ‘중앙부처’와 ‘자치단체’이며, 각 ‘중앙부처’는 자신의 기능적 특성에 맞추어 각자가 소관법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개별사업을 분절적으로 수행
 - 개별 부처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위탁기관으로서 각 부처 산하의 진흥원, 재단(펀드), 연구회, 출연연, 지역센터 등 산하공공기관들을 활용
 - 개별 부처의 청년정책에 있어서 민간과의 사업적 파트너십이나 위탁사업의 빈도는 공공기관에 비교하여 빈도가 크지 않음

- ‘위탁기관을 통한 현금성 지원’ 사업의 경우, 중앙부처는 별도의 기금(예 : 고용보험기금)을 통해 재원을 마련,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재원 규모와 운용 자율성의 제약으로 인하여 재원을 ‘일반회계’에서 충당하는 경향이 있음
- (전문가 델파이조사) 중앙-지방 간 청년정책사업 역할구조 문제
 -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수행 역할의 구조 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지방의 전문성 부족, 지방의 개별사업이 중앙의 정책사업과 중복, 중앙과 지방이 평가와 피평가로 종속적·계열적 관계 형성, 중앙과 지방정부, 지역 전달체계 간 혼선 및 비효율 등
- (전문가 델파이조사) ‘청년정책조정위원회’의 당면 과제와 역할
 - ‘청년정책조정위원회’의 중요한 당면 과제는 통합적 관점의 조정 기능 확보, 실행조직의 확보, 청년들의 목소리가 대표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
 - ‘청년정책조정위원회’의 역할은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,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,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, 청년정책의 평가, 이행 상황 점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,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, 청년의 삶의 질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,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등임
- (전문가 델파이조사) 청년기본계획의 성격
 -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라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며, 생애 주기적 종합적 정책, 부처별 특성

화 정책, 개방형 혁신 정책, 시장원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 등이 기본계획에 수립되어야 함

○ (전문가 델파이조사) 소결

-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될 때 전문성 및 역량 강화가 가능하며, 지역 전달체계를 포괄하는 정책 추진체계 전반의 비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음
- ‘청년정책조정위원회’는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,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순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인
- 기본계획은 생애 주기적 종합적 정책으로, 부처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은 부처별·지역별 특성화 정책의 성격이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확인됨

○ 결론

- 타 부처들과 자치단체들의 유사조직들을 실효적으로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의 명확한 정의, ‘청년정책추진단’이 타 부처들과 자치단체들의 유사 조직들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정의를 선명하게 하여 각 조직들이 서로 구분되거나 연계되는 역할 수행, 적정한 규모, 구성, 운영방식 등 실효적인 내부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설계 및 조직 운영안 모색하는 등의 노력 필요

출처 : 한국행정연구원 (2022.1)

6. 국토교통분야 메타버스 적용 이슈와 전망

- 메타버스는 ‘초월’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(Meta)와 ‘세상’, ‘우주’를 뜻하는 유니버스(Universe)의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며, 경제, 사회, 문화적 가치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세계
-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공간이 현실중심인지 가상중심인지, 적용 대상이 개인·객체의 내면적 영역이 대상인지, 외부환경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4가지 유형(증강현실, 라이프로그, 거울세계, 가상세계)으로 구분됨
 - 초기에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이용되던 메타버스가 코로나19 이후 제한·금지되었던 대규모 공연·행사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할 수 있게 되면서 마케팅·홍보, 부동산·건설, 정치, 행정, 기업 운영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
 - 가상융합(XR, eXtended Reality), 데이터, 네트워크,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되어 다양한 지능화된 가상의 공간들이 만들어지고,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, 각각의 기술은 전 산업과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혁신을 유발하는 범용기술임
- 미국
 - 美정부는 NITRD의 예산 프로그램 중 CHuman을 통해 VR 기술의 활용 교육, 인간과 기계간 상호작용, AR 기술 개발 등을 주요 정책 연구 테마로 삼고 있음
 - 인간-로봇 상호작용 핵심 기술개발과 더불어 국가안보, 국방,

교육 등에 공공영역에 선도적으로 XR 기술을 적용하고 초기 시장 창출·선점을 위한 노력중에 있음

○ EU

- '19년도 하반기 이후 실감미디어, 인터랙티브 기술 분야 기술·산업 경쟁력 강화,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6개의 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함
- EU R&D 이니셔티브 Horizon 2020의 일환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XR 산업의 핵심 기술 확보, 아젠다 발굴, 투자·기술 이전, 커뮤니티 조성 등을 위한 전담 기구인 XR4ALL을 설립함

○ 한국

- '16년 발표한 '9대 국가전략'에서 VR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에 대한 정책지원을 본격화하여 XR 산업발전 지원 및 공공·산업 분야로의 XR 융합을 추진함
-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전략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어가며 '25년에 세계 5대 가상융합 선도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'21년 메타버스는 국가 5대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선정되어 **가칭 메타버스 국가전략 방안**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

○ 국토교통 분야는 국가 인프라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중 **거울세계(Mirror World)**에 근접해 있음

- 다른 유형의 메타버스와 달리 공공이 중심이 되어, 주로 국토·

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음

- 국내 ‘디지털트윈 국토’ 개발 현황에는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 기술로는 에너지분야의 스마트그리드, 제로에너지빌딩, ESS, 교통 분야 ITS 등이 대표적임
- 구축 사례 : ‘디지털트윈 국토’ in 전주, 3D 지도, 서울 S-Map, 세종시 도시행정 디지털트윈 프로젝트 등

○ (시사점) 디지털트윈, 도시 및 건축물의 노후화 실태 파악 등 **메타버스 기술의 국토교통분야 적용 및 활용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**

- 국토교통 분야 메타버스 기술 개발과 적용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, 향후 실질적 운영 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·제도 검토가 필요함
- 건설산업의 가상현실 활용 분야 도출 및 실용화를 위한 정책 연구 수행이 필요하며, 가상현실 기술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력 수급 정책 마련이 요구
- 시민들의 안전한 메타버스 활용과 이를 이용한 장기적인 수요 창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사이의 지속적인 연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, 국제적인 수준의 기술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

출처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(2022. 1)

7. 긴급재난지원금이 관광·문화예술·콘텐츠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

-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‘관광·문화예술·콘텐츠’ 분야에 특화하여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
 -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‘관광·문화예술·콘텐츠 분야’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, 향후 관련 산업지원 및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함
- **(지급 현황)** 이에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1차 긴급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였고,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지역의 재정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 상황에 따라 별도의 ‘지자체별 긴급 재난지원금’ 지원
 - 2020년 5~8월 간 지급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약 18조로, 1인당 평균 약 34만 원이 지급
 - 1차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, 카드 또는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되, 소비 기간(~8월 31일까지), 거주 지역 소비 및 소비 업종 제한하였다는 특징이 있음
-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지출 진작 효과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으나,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종에 국한하여 세밀하게 살펴본 연구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음
- 본 연구는 관광·문화예술·콘텐츠 분야 및 그 세부 업종의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처음 추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

있으며,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고려하였음

- 분석 결과, 4월에 해당하는 16~19주간과 비교했을 때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관광·문화예술·콘텐츠 분야 및 그 세부 업종의 소비지출 증대 효과는 약23.5-28.7% 수준으로 나타남
- 마지막으로, 관광·문화예술·콘텐츠 분야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가 같지 못하고 이질적이라는 사실은, **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보다 미시적인 정책**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
 - 일정한 정부 재원을 1차 재난지원금처럼 국민 대부분에게 분배하는 정책과 피해 업종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거시경제적인 효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나, 전자는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
 - 특히, 분석 결과처럼 같은 분야로 간주하는 **업종들 사이에서도 재난지원금의 소비지출 효과는 상이함**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
 - 현재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지원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으나, 관광·문화예술·콘텐츠 분야는 주무부처와 규제당국이 다른 경우가 많아 지원책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
 - **관광·문화예술·콘텐츠 산업**은 고정비의 비중이 높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수록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으며 음식점업과 같이 배달로 소비지출 감소의 일정 부분을 벌충할 수 있는 여지도 없음

출처 : 한국문화관광연구원(2021.12.)

8. 「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

- 고향사랑기부금은 “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”에 기부하는 제도
 -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「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이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 통과, 2021년 10월 제정,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
- 「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의 주요 내용
 - 첫째,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주체는 **개인**으로, **법인은 기부 주체가 되지 못한다**.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기부 대상은 현재 거주지 이외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이다(동법 제4조). 개인별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백만 원이다(동법 제8조).
 - 둘째, 기부에 대한 감사 표시로 지방자치단체는 **기부자에게 답례품(지역특산품·지역사랑상품권·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등)을 제공할 수 있다**. 현금·귀금속·보석·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상품권 등·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 품목을 답례품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(동법 제9조). 「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, 향후 시행령에서 답례품의 상한액을 기부액의 30% 이내, 최대 1백만 원 이내로 규정할 예정이다.
 - 셋째, 고향사랑기부금의 관리·감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**기금을 설치**하고(동법 제11조), 고향사랑기부금의 접수현황 및 운용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(동법 제13조).
 - 넷째, 「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

있지 않지만,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(국세)와 지방 소득세(지방세)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.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(100%) 세액공제하고, 10만원 초과 5백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6.5%를 세액공제할 것으로 보인다.

-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. 「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현재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따라 **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규정해야 한다.**
- 고향사랑기부금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,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있도록, 철저한 준비를 거쳐 「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이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.

출처 : 국회입법조사처(2022.2)